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이헌승·박성훈·윤상현
김성원·서범수·송석준
박덕흠·김도읍·김상훈
김미애·김소희·서명옥
한지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(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”를
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
및 제10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과징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6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,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,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「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,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「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9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과징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